

지방공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및 지방공사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기 획 경 제 위 원 회

지방공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및 지방공사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993. 12. 1.
기획경제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3 년 11 월 17 일
- 회부일자 : 1993 년 11 월 17 일

다. 상정일자

-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93. 12. 1.)상정
-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유보의결)
- 제7차 기획경제위원회('93. 12. 6.)상정
- 질의, 답변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담당관 이 종 배)

가. 제안이유

- 내무부장관의 도지사권한 위임사항 변경
- 의료원 제반업무 이관(보사환경국 → 기획관리실)

나. 주요골자

- 병원의 분원설치 승인 : 내무부장관→도지사(안 제 3조 제2항)
- 원장 임면 : 내무부장관→도지사(안 제10조 제1항)
- 의료원 제반업무이관 : 보사환경국→기획관리실
(안 제16조 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안 창 국)

지방공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및 지방공사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원의 분원설치승인, 원장임면에 대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사항을 시.도지사에게 권한위임에 따라 제3조 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도지사”로 제10조 제1항중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의 자구를 삭제하고, 실국간 업무이관에 따라

경영관리 분야를 기존 보사환경국에서 관장하던 것을 기획관리실로
이관코져 하는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규정에 적법하도록
승인함이 타당 할것으로 사료됨

4. 질문답변요지 : 해당사항 없음

5. 토 론 요 지

-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유보
- 고문변호사 정명수에게 자문후 결정

6. 심 사 결 과

- 1차심의('93. 12. 1.)시 '93. 12. 16까지 유보의결
- 2차심의('93. 12. 6.)상정하여 원안대로 가결(참석 8, 찬성 8)

7. 소수의견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붙임 : 지방공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및 지방공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